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3. 9. 3.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8월 20일 마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2003년 8월 20일
- 다. 상정일자 : 제98회 임시회 제6차위원회 (2003. 9. 3)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토목과장 김길영

가. 제안이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시행하는 굴착복구 공사는 공사완료 후 원인자부담금을 일괄 징수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 간접복구비 감면 대상확대로 중복굴착 방지 및 보도 간접손괴 영향폭을 축소하여 굴착복구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등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업무를 민원편의 위주로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선 허가하고 복구공사 완료 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3조 관련)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가

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안 제3조의 2 관련)

○ 보도의 블록·타일구간 간접손케 영향폭 산정기준을 사방 60cm에서 40cm로 축소 조정하여 굴착원인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규정함. (제3조 관련 안 별표1)

○ 차도 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간접복구비를 부과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함. (제3조 관련 안 별표1)

1)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케 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 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2)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시 간접손케 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3)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박 관 수)

○ 동 건은 2003. 6. 23일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개정통보에 의하여 현행 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 제3조제4항에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은 선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 개정조례(안)에서는 개정된 서울특별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와 같이 공공·공익사업의 경우 주민편익을 위하여 우선 복구공사를 실시하고 공사가 완료된 후에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후납 실시에 따른 체납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방안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 관련 안 별표1에서는 간접복구비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간접손케영향폭을 축소하여 비용부담을 경감토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 안 제3조의2 부담금의 강제

징수 규정은 시행시기를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요지(박지위 위원) : 후납으로 개정하는 이유는?
- 답변요지(김길영 토목과장) : 현행은 선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사업과 공익사업으로 시급한 경우 선 허가하고 복구공사 완료 후 징수할 수 있도록 함.
- 질의요지(박지위 위원) : 간접복구비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 답변요지(김길영 토목과장) : 복구비용보다 부과금액이 많아 현실화 하고자 함.
- 질의요지(유웅봉 위원) : 조례개정은 행정간소화를 위한 것이 아닌가?
- 답변요지(김길영 토목과장) : 부담금 징수업무를 민원편의 위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장) : 공공기관의 경우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 후납으로 하는 경우가 있나?
- 답변요지(김길영 토목과장) : 있음.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장) : 후납징수 규정은 임의규정임으로 예산확보시는 선납으로, 미확보시는 후납으로 하여도 되는가?
- 답변요지(김길영 토목과장) : 시급한 사업에서도 예산확보의 경우에는 선납할 수 있음.
- 질의요지(신봉현 위원장) : 간접손괴영향폭 산정기준을 사방 60cm에서 40cm로 축소 조정하여도 문제없나?
- 답변요지(김길영 토목과장) : 평균적으로 40cm를 규정하였으나, 영향이 미치는 부분까지도 복구하여야 하는 것임.

5. 토론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8. 기타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2003.

제 출 자 :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이 시행하는 굴착복구 공사는 공사완료 후 원인자부담금을 일괄 징수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 간접복구비 감면 대상확대로 중복굴착 방지 및 보도 간접손해 영향폭을 축소하여 굴착복구비 부담을 경감토록 하는 등 도로복구원인자 부담금 징수업무를 민원편의 위주로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선 허가하고 복구공사 완료 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관련)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나.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2 관련)

다. 보도의 블록·타일구간 간접손해영향폭 산정기준을 사방 60cm에서 40cm로 축소 조정하여 굴착원인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규정함.(제3조 관련 안 별표1)

라. 차도 노면의 평탄성 향상 및 중복굴착 방지 등을 위하여 다음의 경우에는 간접복구비를 부과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함.(제3조 관련 안 별표1)

- (1)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

손케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 단위로 평삭 정비하는 경우

- (2)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시 간접손케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 (3)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3. 근거법령

가. 도로법(2002.2.4 법률 제6656호) 제64조 및 제78조

나. 국세징수법(2002.12.26 법률제6805호) 제21조 및 제22조

다. 지방세법(2002.12.30 법률6852호) 제28조

4. 조 례 (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2003.7.5~7.25)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나.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3.08.18)

다.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표 1 “도로복구공사 굴착 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보도란 일반보도블록 및 소형고압블록의 적용단면중 “모래:3cm”를 각각 “모래:4cm”로 하고, 동표의 종별란중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 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③(생략)</p> <p>④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관로시설 등이 불통·파열·누출되거나 기타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p> <p>(신설)</p> <p>(신설)</p>	<p>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①~③(현행과 같음)</p> <p>④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p>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담해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p> <p>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 ①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②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종 별	부 호	적 용 단 면	적용범위	종 별	부 호	적 용 단 면	적용범위
아스팔트 ~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		(생 락)		아스팔트 ~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		(현행과 같음)	
보 도	일반보도 블 록	일반보도블록 표층 : 6cm 래 : 3cm 보 조 기 층 : 10cm	단, 보·차 도가 구분 되지 않은 경우는 자 랑 통행 의 유무에 따 라 보조기 층의 사용 량을 증감 할 수 있 다.	보 도	일반보도 블 록	일반보도블록 표층 : 6cm 래 : 4cm 보 조 기 층 : 10cm	
	소형고압 블 록	소형고압블록 표층 : 7cm 래 : 3cm 보 조 기 층 : 10cm			소형고압 블 록	소형고압블록 표층 : 7cm 래 : 4cm 보 조 기 층 : 10cm	
	오나멘트 타 일	오나멘트타일 표층 : 4.5cm 물 함(1:3) : 3cm 콘크리트 기초 : 3cm 보 조 기 층 : 10cm			오나멘트 타 일		
	투수성 아스콘	투수성아스콘 표층 : 4cm 층 : 10cm 래 : 5cm			투수성 아스콘		
	기 타	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기 타	기존보도의 단면에 준한다.	
사 리 도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유지관리하 는 비포장 도로	비포장 도로			
기타 도로시설물	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기타 도로시설물			
비고 : ①보도를 복구하는 경우 적용단면은 기존보도의 단면에 따라 그 조정이 가능하며, 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퍼센트는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기층·보조기층의 재료와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비고 : ①----- ----- ----- ----- ②----- -----			

< 별 표 1 >

도로복구공사 굴착 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제3조제3항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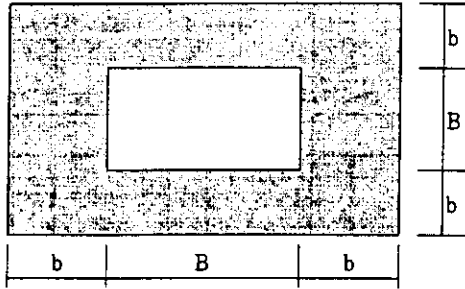
- 표준 최적구배 - 1 : 0.1 (기존 도로는 완전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간주함)
- 최소굴착면적, 최소굴착폭, 간접손괴영향구간 및 복구비용

구 분	차 도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블록 및 타일류	투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최소굴착면적	0.7m × 0.7m	0.8m × 0.8m	0.7m × 0.7m
최소굴착폭	0.7m	0.8m	0.7m
간접손괴영향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소굴착 및 소규모굴착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25m 구간 굴착깊이가 2.5m미만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 구간 (굴착시 카타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방 0.6m까지의 범위) 굴착깊이가 2.5m이상 굴착경계로부터 사방으로 굴착깊이의 1/5까지 범위(굴착시 파일, 토류벽 등의 미설치 또는 카타기 미사용시는 0.3m씩 추가 가산)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또는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아스팔트포장구간에 한하여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3m구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4m구간 보차도경계 인접부분에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굴착 2.25m(이 경우 굴착면적은 1m × 1m로 계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단, 각종 전주 및 표지판 등의 설치를 위한 보차도경계 인접부 굴착의 경우에는 블록 및 타일류의 경우에 준한다.
복 구 비 용	직접	직접손괴부분 복구비	직접손괴부분 복구비
	간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스팔트포장도로 -손괴영향구간의 중층 및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괴영향구간의 덧씌우기(두께 5cm) 비용 콘크리트포장도로 -손괴영향구간의 콘크리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괴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 비용 아스팔트덧씌우기포장도로(기존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 -손괴영향구간의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표층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괴영향구간의 아스팔트 덧씌우기(5cm)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블록류, -굴착구간 및 손괴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전체 표층용 블록량의 30%를 새로운 블록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타일류 -손괴영향구간의 콘크리트기초 시공비 -굴착구간 및 손괴영향구간의 표층 시공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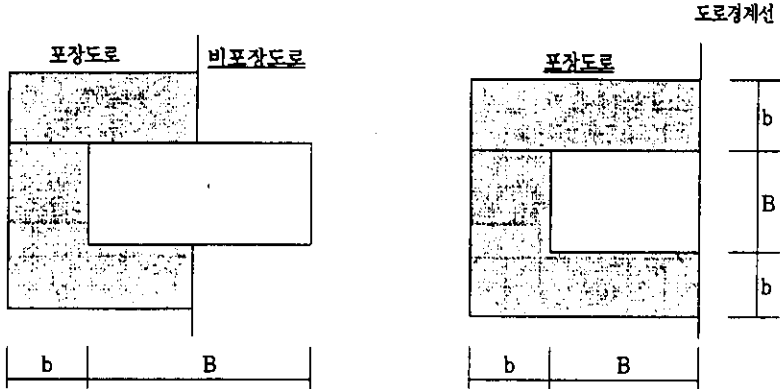
3. 굴착폭(B), 간접손계영향구간(b) 및 간접복구단면

가. 굴착폭(B) 및 간접손계영향구간(b)

1) 표준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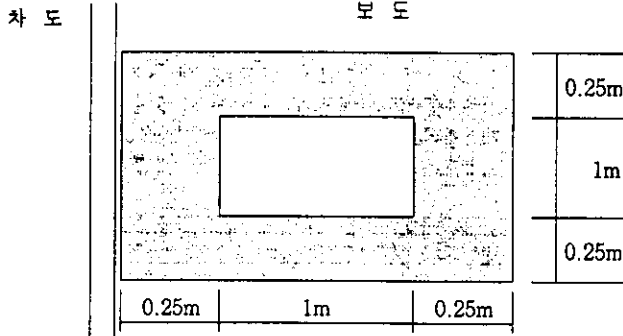


2) 비포장도로 병행굴착 및 도로경계선까지의 굴착 평면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3) 보차도경계선 인접부 굴착 평면도 (보도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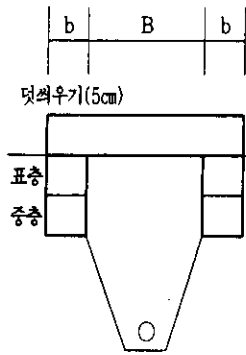
보차도경계블록(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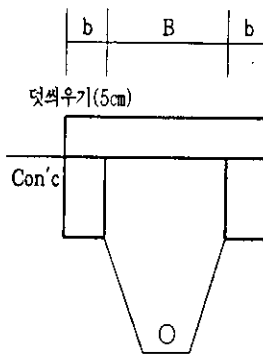
나. 간접복구단면

1)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 포장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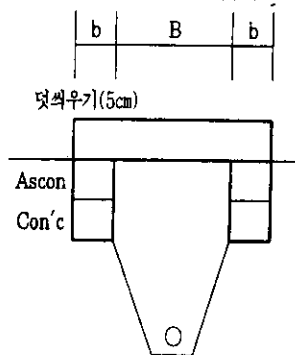
① 아스팔트



② 콘크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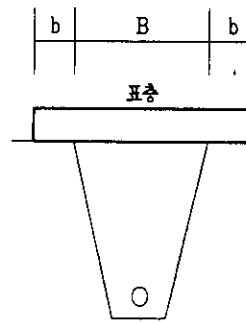


③ 아스팔트덧씌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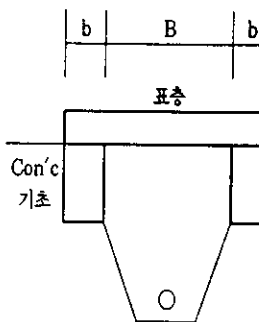


2)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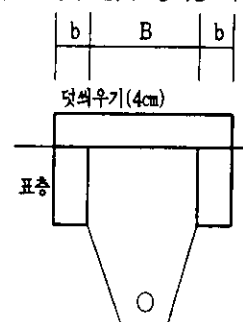
① 블록류



② 타일류



③ 부수성아스콘, 아스팔트, 콘크리트류



4. 간접복구비 미부과 대상

- ① 사업시행자가 굴착구간의 도로폭 전체를 복구하는 경우
- ② 보도구간에서 굴착폭외의 잔여 보도폭 합계가 1m 미만일 경우
이 경우 보도폭 전체를 복구하여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때에는 직접손해부분 복구비 및 직접손해부분을 제외한 잔여구간의 표층시공비를 직접복구비용으로 징수한다.
- ③ 차도구간에서 사업시행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굴착구간의 간접손해영향구간을 초과하여 차로단위로 평상 정비하는 경우
- ④ 2인 이상 사업시행자가 동일구간에서 동시 병행굴착시 간접손해영향구간이 중첩되는 경우 감소부분
- ⑤ 사업시행자가 도로관리청의 도로정비·개축·신설공사 계획에 따라 병행시행을 위하여 굴착하는 경우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또는 개량을 위해서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 ⑦ 보차도경계블록(석), 도로경계블록(석), 측구, 도로구획선 등 도시시설물의 손괴에 대하여 복구하는 경우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리청에 복구를 의뢰할 경우에는 당해년도 시설단가에 의하여 직접복구비를 산정 부과한다.